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계약관련 ☎(02) 2110-3486 법무부 운영지원과
기술관련 ☎(02) 2110-3132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1. 용역개요

1.1. 발주기관 : 법무부

1.2. 용역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공사 전기감리용역

1.3. 용역현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0일(40개월)

1.5. 용역예정금액 : 1,063,227,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966,570,000원 + 부가가치세 96,657,000원)

1.5.1. 1차 용역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6. 공사에정금액 : 9,1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전기감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함

※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86호, 2024.1.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자기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용역완료 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총사업비 대상, **장기계속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1109(종합감리업 1108)**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9. 18.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공고된 엑셀서식 오류 등)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 사실과 다름 없음 확인각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보조감리원은 만점적용)**
-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 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1,063,227,000원**을 적용합니다.
-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 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전기설계사업자 평가 참조)
-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감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01.**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0. 31.**(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단, 낙찰예정자 자료제출 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낙찰예정자 지위 상실]
-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9. 17. 18:00(PQ평가서 접수마감일 전일)**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6.2.5. 납부기한 : 2026. 09. 30. 18:00(입찰서 마감 전일)
- 6.2.6. 납부장소 : 나라장터 G2B
- 6.2.7.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8. 10:00 ~ 2026. 10. 0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5일 이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7.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8.1. 개찰일시 : 2026. 10. 01. 11:00
-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한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10.1. 담당자
 -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법무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전화 02-2110-3486)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사업담당 (전화 02-2110-3132)
-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특급	1명	평가	
비상주 감리원			고급	1명	평가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불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배치계획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2.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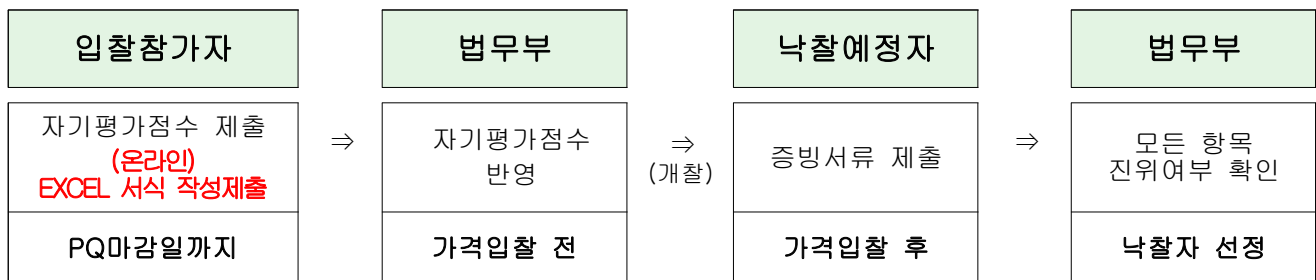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엑셀양식 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i) PQ 통과점수 또는 (ii)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